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3-008-080호 (사건번호 : 2020조총0002)

안 건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 결 연 월 일 2023. 5. 10.

주 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직원 수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언론보도*('20.10.16, 10.20)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20.10.20.~'23.4.11.)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경위

기자가 재활용 분리장에 들어가 마대자루 속에 있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발견하고 사진 촬영 후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여 보도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재활용 분리장에서 기자에게 발견된 2개 부서() 서류들은 종이류 쓰레기통에 담겨있다가 재활용 분리장까지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 관련 부서들에는 CCTV가 없거나, 있더라도 종이통 위치를 비추지 않고 있음

<관련자 대상 확인 내용>

관련자	확인 내용
해당 기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재활용 분리장 안에 들어갔으며 마대자루 속에 있는 개인정보 포함서류들을 발견하고 사진·동영상 촬영 후 서류 들은 마대자루에 두고 나왔다고 언급
구청 환경미화 직원 (용역업체)	해당 부서들에서 종이류 등을 재활용 분리장에 반출하였음 재활용 분리장 반출은 1일 1회 이상, 외부 재활용업체에서 주 1~2회 방문 수거
과	신규직원*('20.1월)이 문서세단기로 서류를 파쇄하던 중 걸려온 민원 전화를 받기위해 본인 자리로 이동한 13시경 이후에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 * 신규직원, "같은 날() 퇴근 무렵 파쇄 중이던 자료가 생각이 나 파쇄기가 있는 서고에 갔으나 자료가 없는 것을 보고 다른 직원들이 파쇄하면서 같이 파쇄 해 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소명
과	해당 문서의 출력자 등 관련자를 찾기 위해 업무관리시스템('18.9.10~) 조회 등 내역을 확인했으나 이력 부재

2) 유출경과 및 대응

일	시	피심인의 유출 인지·대응 내용
		기자가 피심인에게 전날() 재활용 분리장에서 개인정보 포함 서류들을 촬영한 사실과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어 해당 사실 인지
		구청 직원 4명이 재활용 분리장에서 개인정보 서류들이 담긴 마대자루 확인 후 해당 자료 회수 / 37건 중 33건 회수(4건 미회수)
		"개인정보 기재서류 파기 철저 안내" 문서 시행(피심인 과-21813)
		전 부서 대상 사무실 보안점검 실시(잠금장치, 출력물 비치 등)
		재활용분리장을 제한구역으로 지정 시행(잠금장치 설치)

3) 유출규모 및 항목

2개 부서(과,과)가 '12.4월 ~ '20.5월 처리한 서류 중 총 37건119매 66명(주민등록번호 63건, 민감정보(범죄경력자료 등) 1건 포함)의 정보

소관부서	자료명 및 규모	업무기간
과	총 33건(105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계산서(29건)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3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1건)	'20.1~5월
과	총 4건(14매): ▲ 관련 행정처분통보의뢰(1건) ▲ 수사협조의뢰(1 건) ▲ 확인(자인)서(1건) ▲ 차분내역 등록화면 캡처본(1건)	'12.4월~'15년

회수(34건	<u>†</u>)	未 회수(3건)		
과 소관 총 33경과 소관 총	,	• 과 소관 총 3건(13매*) * ^① 수사협조의뢰 ^② 확인서(주민등록번호 포함) ^③ 행정처분 통보 의뢰(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포함)		

부서명	연번	자료명	건수 매수	대상자	개인정보 항목	비고
	1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계산서	29건 81매	민원인 양수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과 (33건)	2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3건 23매	민원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환급계좌번호	회수 완료
	3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1건 1매	민원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1	행정처분내역 등록 화면 캡처본	1건 1매	처분 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처분내용	
	2	수사협조 의뢰 (등록현황)	1건 2매	수사 대상	이름, 생년월일, 수사내용	※ 未 회수 · 경찰서 통보('15.29) →피심인 접수('15.211) ·첫장 1매 언론보도
과 (4건)	3	확인(자인)서 및 부속서류	1건 6매	점검 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未 회수 ·128.29. 업주로부터 징구
(4.5)	3			민원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민원내용	·첫장 1매 언론보도
	4	행정처분 통보의뢰	1건 5매	수사 대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사내용(범죄 경력 자료 및 수사 경력자료)	※ 未 회수 · 경찰서 통보('12.5.3) →피심인 접수('12.5.7) ·첫장 등 4매 언론보도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4. 1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5. 11.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가.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9조에 따라 "민감정보·고유식별 정보·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안전성 확보조치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6호)를 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 '고시'라고 한다.)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 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제11조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범죄경력자료 ·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은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를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위반행위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물리적 안전조치)	보호법 §29	§30①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은 행위(고시§11②)

나. 개인정보의 유출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려야 하나, '접근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문서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정 기한 내에 (5일 이내)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시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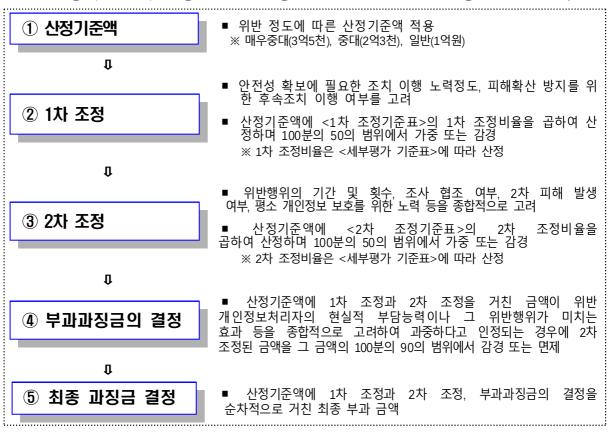
위반행위	법률	세부내용(고시 등)
개인정보 유출통지 등	보호법 §34①	개인정보가유출되었음을 알게되었으나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면제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2제1항(과징금의 부과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별표1의3],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제2022-4호, 2022.10.20.,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면제한다.

<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 산정 절차 >



가. 기준금액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에 따라 위반 정도가 '일반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1억 원을 적용한다.

< [별표 1의3] 2. 가 >

위반 정도	산정 기준액	비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5천만 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 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이하 '분실 등'이라 한다)된 경우
주대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등이 된 경우 및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등이 된 경우
일반 위반행위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등이 된 경우

* ①유출 건수가 10만건 미만 / ② 위반행위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는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제2항)

나.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1.4점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인 5,000만 원을 감경한다.

< 1차 조정 기준표 >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	1차 조정 비율
2.5이상	+100분의 50
2.3이상 2.5미만	+100분의 35
2.1이상 2.3미만	+100분의 20
1.9이상 2.1미만	-
1.7이상 1.9미만	-100분의 20
1.5이상 1.7미만	-100분의 35
1.5미만	-100분의 50

< 세부평가 기준표 >

	부 고 고려사항	<u>점</u> 수 비중	3점	2점	1점
안 전 성 확 보 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각 호의 조치 중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실하게 한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암호화	0.2	주민등록번호의 송신·전달·저장 시 이를 암호화 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한 암호화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지 않은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안 프로그램	0.2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치	접속기록의 보관 등	0.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 변조 등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거나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 방지 후속 조치 등		0.2	알게 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정보주체에게 통지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1.2점에 해당하여 1차 조정된 금액의 50%인 2,500만 원을 감경한다.

< 2차 조정 기준표 >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	1차 조정 비율
2.5이상	+100분의 50
2.1이상 2.5미만	+100분의 25
1.7이상 2.1미만	-
1.3이상 1.7미만	-100분의 25
1.3미만	-100분의 50

< 세부평가 기준표 >

부 ⁷ 고려사항	<u>₩점수</u> 비중	3점	2점	1점
위반기간	0.2	위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횟수	0.2	최근 3년 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근 3년 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조사협조	0.2	위반행위 조사 시 조사기간내 자료 미제출, 조사자료 은폐 등 조사방해의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 조사 시 조사기간내 자료 미제출, 조사자료 은폐 등 조사방해의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차 피해	0.2	위반행위로 인해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큰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0.2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원교육을 하거나 표창을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현저히 큰 경우*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 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2차 조정된 금액을 면제한다.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63건으로서, 재활용 분리장에 버려져 1인(기자)에게만 유출되었고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8조(부과과징금의 결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 2.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마. 최종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이 보호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차, 2차, 부과 과징금의 결정을 통하여 과징금을 면제한다.

기준 금액	1차 조정	2차 조정	부과 과징금 결정	최종 과징금
1억원	5,000만 원	2,500만 원	면제	
일반 위반행위 ※ 10만건 미만	1차 산정점수 1.4점 ⇒ 50%(5,000만 원) 감경	2차 산정점수 1.2점 ⇒ 50%(2,500만 원) 감경	유출 정보주체 수 100명 미만 ⇒ 면제	면제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9조,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및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법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에 따라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은 과징금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임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3조제2항(민감정보의처리제한), 제24조제3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제1항(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위반에 대해서 각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1,2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u>위반</u>
자.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 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I 번 세 /5소	600	1,200	2,400
처.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u> </u>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2023. 3. 8. 이하 '과태료 부과지참') 제8조(과태료의 가중) [별표2]의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과태료의 감경)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 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조사 기간 중 자료제출·진술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의 과태료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 과태료의 감경기준(제7조 관련) >

기준	감경사유	감경비율
위반 정도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 또는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며 피해발생이 없는 경우	기준금액의 50% 이내
조사 협조: 자진 시정 등	2.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기준금액의 40% 이내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9조,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D) D=(A+B-C)
제23조제2항(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24조제3항(고유식별번호의 처리제한)	법 제75조제2항제6호	600	-	300	300
제29조(안전성확보 조치 의무 위반)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	법 제75조제2항제8호	600	-	300	300
계		1,200	-	600	600

3.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11.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 (제4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개인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선번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군긴	명칭	위반조항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4		법 제23조제2항	- 안전조치의무 위반 과태료			
		법 제24조제3항		안전조치의무 위반 2022 5 10	2022 F 10	과태료 300만 원
1		법 29조		2023. 5. 10.		
		법 제34조제1항	유출 미통지		과태료 300만 원	
2023년 5월 10일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V. 결론

피심인의「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9조,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및 8호,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과 공표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3년 5월 10일

-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